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2006
------	------

2024. 9. 1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8월 12일, 김경 의원 외 11명

나. 회부일자 : 2024년 8월 14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9.9.)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김경 의원)

1. 제안이유

- 2024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립박물관'의 관람료 면제 대상에 임산부 본인을 추가하여 임산부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산부 본인 대한 관람료 면제(안 제5조제1항제18호 신설).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옥심)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임산부가 시립 문화·체육시설 이용할 때 입장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게 한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2024.5.20.)에 맞추어 임산부에 대한 예우와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기 위해 발의되었음.

나. 개정의 필요성

- 2021년 통계 기준 OECD 회원국(38개국) 평균 합계출산율은 1.58명이었으며, 우리나라는 0.81명(2021년)으로 회원국 중 유일하게 0명대를 나타내면서 2013년부터 11년째 꼴찌를 기록하고 있음. 특히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0.55명을 기록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 서울시는 올해 세계 최하위 수준의 출산율을 끌어 올리기 위해 ‘탄생 응원 서울 프로젝트’로 총 1조 7,775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히고, 임산부 복지 향상을 위해 건강·의료·경제·양육 등 여러 방면에서 혜택을 마련하고 있음.
- 정부는 이미 2011년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배려하기 위해 국립공연장, 국립예술단체의 공연 관람 시 할인을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출자·출연 기관인 세종문화회관도 임산부가 일부 공연을 관람할 때 관람료의 20%를 할인하는 정책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한편, 「2023년 임신부 배려 인식 및 실천수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신부가 임신기간 중 가정에서 겪은 일 중 가장 불만족 혹은 부정적인 경험으로,

‘임신으로 인한 신체적·정서적 변화에 대한 이해·지지 부족’이라는 응답이 34.5%를 차지한 바, 각종 재정적인 지원책과는 별개로 임신부에 대한 친화적인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서울시의회는 재정적인 지원 이외에도 임신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지난 4월 「서울특별시 임신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현재 제정·시행되고 있음.
- 따라서 동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임신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취지를 반영하여 임신부의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임신·출산에 대한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됨.

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관람료 면제(안 제5조제1항제18호)

- 「지방자치법」 제161조¹⁾에 따라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그 설치와 운영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기에 서울시는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증진을 위하여 박물관을 건립 및 운영

1)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하고 있으며, 그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정해놓고 있음.

- 또한 「지방자치법」 제156조2)에 따라 사용료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바, 공익상 필요하다고 할 때 사용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음(법제처 2016. 9. 22. 의견제시 16-0260). 이에 박물관을 이용하는 시민 중 일부에 대해서 정책적 목적에 따라 박물관의 관람료 면제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립박물관의 관람료 면제 대상으로 임산부 본인을 추가하려는 동 개정안에는 법제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2023년 임산부 배려 인식 및 실천수준 조사 결과」에서 도움이나 보살핌을 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 ‘배가 나오지 않아 임산부인지 티가 나지 않아서’(50.8%)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점은 주목할 만함.

특히 동 개정안의 임산부 기준이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 설정되었으므로 신체적 외형만으로는 정책 수혜 대상자인 임산부를 판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서울시는 임산부를 증빙할 수 있는 앱카드를 개발하여 ‘서울지갑’ 앱을 통해 보급하려는 바, 관람료 면제 자격확인 시 이를

2)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적극 활용하여 임산부가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서울지갑' 앱에 임산부 모바일 앱카드 예시 >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0명, 참석위원 6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006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8월 12일

발 의 자: 김 경, 김규남, 남창진,
박강산, 박승진, 박철성,
서상열, 아이수루, 유정희,
, 이원형, 이종환 의원(11
명)

1. 제안이유

- 2024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립박물관'의 관람료 면제 대상에 임산부 본인을 추가하여 임산부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임산부에 본인 대한 관람료 면제(안 제5조제1항제18호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타 : 신 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8호를 제1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임산부 본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관람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p>1. ~ 17. (생략)</p> <p><u><신설></u></p> <p>18. (생략)</p> <p>②·③ (생략)</p>	<p>제5조(관람료의 면제) ① ----- ----- ----- -----.</p> <p>1. ~ 17. (현행과 같음)</p> <p>18. 「<u>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u>」에 따른 임산부 본인</p> <p>19. (현행 제18호와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같은 조례 제5조(관람료의 면제) 제1항제18호를 변경·신설함에 따라 관람료 수입이 감소할 수 있으나 소관부서 확인결과 현재 서울시립박물관은 제4조(관람료)제1항1)에 따라 무료관람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규정신설에 따른 추가적인 세입감소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현행 같은 조례 제4조(관람료)제2항2)에 따라 박물관³⁾ 자체 기획전시나 전시실을 대관 받아 전시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으나, 서울시 문화본부 박물관과 유선조사 결과 현재 까지 관람료를 받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에 향후 발생할 개연성 또한 드물기 때문에 예외적 상황으로 함
- 또한, 동 개정안은 정책에 따른 혜택 대상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 희 선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계분석관 손 제 승

☎ 02-2180-7954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1)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관람료) ①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2)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관람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이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전시나 전시실을 대관받아 전시를 하는 경우는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3) 서울역사박물관, 청계천박물관, 서울생활사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서울우리소리박물관, 서울공예박물관 (총 6개 박물관)